

신입직(관리6급) 청각장애인 어학능력시험 안내문

2023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규직 채용 듣기점수 적용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

❖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(청각장애인 2·3급)과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듣기시험 점수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어학능력시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○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
- 1 '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인 사람
- 2 '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사람

- ☞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(2·3급)
- ☞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
<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>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
2. 신입직(관리6급_일반·청각장애인) 채용 어학시험 기준

| 대 상 | | 토플(TOEFL_IBT) | 토익(TOEIC) | 텡스(TEPS)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신입직(관리6급) | 일 반 | 71이상 | 700이상 | 340이상 |
| | 청각장애인 | - | 350이상 | 204이상 |

- * 어학시험은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전 이후('21.4.7.~)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(~'23.4.24.)까지 성적 발표한 시험에 한하여 인정
- * 단, 유효기간(2년)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,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

3. 제출서류 등 안내

① (제출서류) 의사 진단서 원본*(의사 소견서 불인정)

*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(공무원 시험 기준 준용)

② (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
③ (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
- (가)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①

- (나)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②

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7호)에 따라 검사

- (다)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③

【 참고 :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】

상기인은

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,

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인 사람으로서

③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4.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[공인어학성적 작성가이드 참조]

- (신청·제출 : 응시자)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선택하고, 어학성적표와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 등을 입사지원서 마감 기한까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

※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2·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

* 예 : (선택) 청각장애_TOEIC 또는 청각장애_TEPS

※ 유효한 기간 내의 청각장애 증명서, 진단서 원본 등을 토익성적표와 함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 채용시스템 서류제출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(대상 확인 : HUG → 응시자)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여부 확인

5. 유의사항 등 안내

-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 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시험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